
2018년 응지세무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2018. 12.

- 목 차 -

I. 자체평가의 개요

1. 자체평가의 목적.....	1
2. 자체평가의 필요성.....	1
3. 가치체계.....	1
4. VISION 2020과 자체평가의 연계성.....	2
5. 자체평가 학칙 및 규정.....	2

II. 자체평가 추진 체계

1. 전담조직 구성.....	6
2. 추진절차.....	7

III. 자체평가 평가 항목[지표]

1. 개요.....	8
2. 2018년 자체평가 지표 선정 결과.....	9

IV. 자체평가 결과

1. 총괄.....	10
2. 각 기준별 자체평가 결과.....	11

V.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1. 활용계획.....	14
2. 향후 개선계획.....	14

1. 자체평가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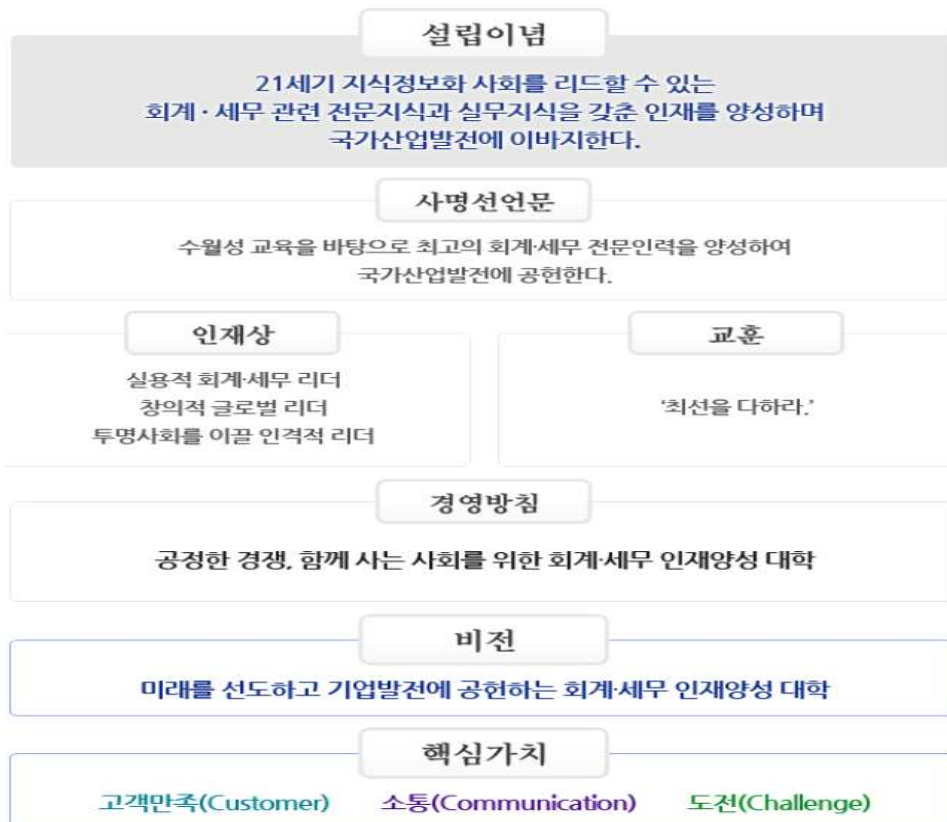
1. 자체평가의 목적

- 교육품질 유지 개선을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
- 자기혁신을 통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및 대학 발전 방향 제시
- 대학 구성원의 평가참여 및 내부 공시를 통한 대학발전 목표인식 및 달성이지 확립
-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 향후 대학평가인증제를 대비한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

2. 자체평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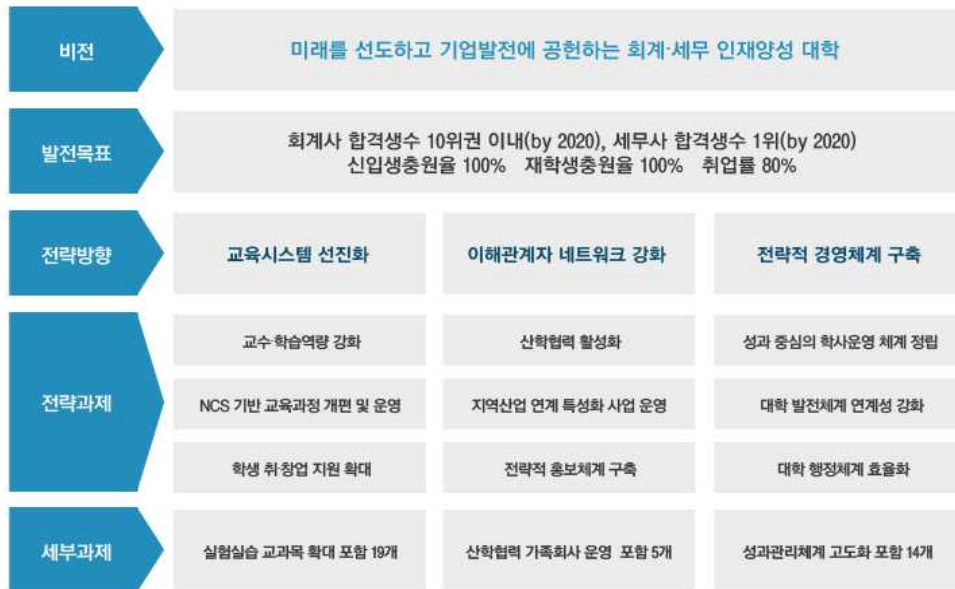
- 우리대학은 2018년도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점·약점 및 특성을 파악하여 추후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대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대학의 교육품질 개선(CQI)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침을 설정하고자 함

3. 가치체계



4. VISION 2020과 자체평가의 연계성

-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를 통해 자체평가상의 지표 상승과 발전계획 달성률 상승을 목표로 설정
- 회계·세무로 특화된 우리 대학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여 대학 특성화 전략에 활용함



※ 3대 전략방향, 9대 전략과제, 38개 세부전략 과제※

5. 자체평가 학칙 및 규정

(1) 학칙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체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함

제20장 자체평가

제89조(자체평가 등)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적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자체평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9조에 따라 웅지세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가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6조(평가시기)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시기와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평가 기구

제7조(평가관)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

② 평가관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총장,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취창업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 총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3. 자체평가 지표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4. 자체평가 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총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며, 위원은 학부장 및 각 행정부서의 실무책임자(팀장)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체평가 지표개발
- 2. 자체평가 자료수집 및 검증
- 3. 자체평가 실시,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4. 자체평가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안 보고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2조(평가계획수립) 기획처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계획을 행정부서에 통지한다.

제13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는 기획처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평가실시) ① 기획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보고)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7조(평가결과 활용) 대학의 발전계획 및 수립, 교직원 업적평가 및 인사고과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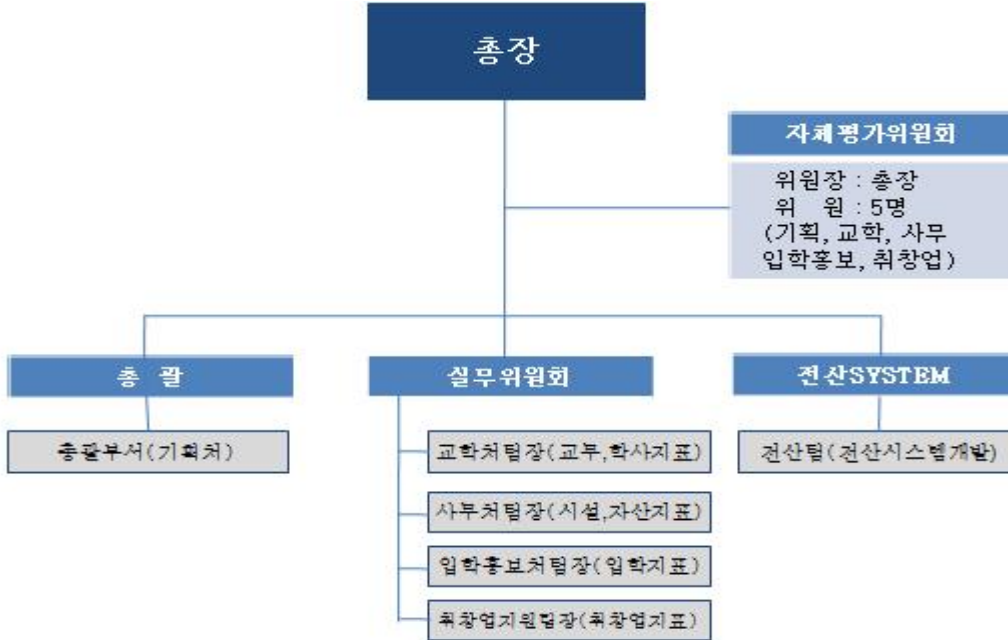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개정)
 1. 제 7조 ② “기획처장”을 “총장”으로 개정하다.
 2. 제 7조 ④ “기획처”를 “부속실”로 개정하다.
 3. 제 8조 ②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을 “교학처장, 대학시설관리단장, 대외협력처장”으로 개정하고 “학생처장, 평생교육원장”은 삭제하다.
 4. 제 9조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를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로 개정하다.
 5. 제 11조 “총 7인”을 “6인 이상”으로 개정, “기획처장”을 “총장”으로 개정, “6인”은 삭제하다.
 6. 제 13조 “기획처”를 “부속실”로 개정하다.
 7. 제 14조 “기획처”를 “부속실”로 개정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자체평가부터 적용한다.
2. (규정의 개정)
 1. 제 7조 ② “총장”을 “기획처장”으로 개정하다.
 2. 제 7조 ④ “부속실”을 “기획처”로 개정하다.
 3. 제 8조 ② “교학처장, 대학시설관리단장, 대외협력처장”을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취창업지원처장”으로 개정하다.
 4. 제 9조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를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로 개정하다.
 5. 제 11조 ② “6인 이상”을 “10인으로 구성”으로 개정, 위원장을 “총장”을 “기획처장”으로 개정, 위원은 “각 행정부서의 실무책임자(팀장)”을 “학부장 및 각 행정부서의 실무책임자(팀장) 8인으로 구성”으로 개정하다.
 6. 제 12조 “부속실”을 “기획처”로 개정하다.
 7. 제 13조 “부속실”을 “기획처”로 개정하다.
 8. 제 14조 “부속실”을 “기획처”로 개정하다.

II. 자체평가 추진 체계

1. 전담조직 구성



구분		내용 / 기능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총장 - 당연직위원 :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취창업지원처장
	기능	- 평가의 기본원칙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실무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의 검증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자체평가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획처장 - 위원 : 학부장 및 각 행정부서의 실무책임자(팀장)로 구성
	기능	- 자체평가 지표개발 -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의 실시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 결과의 보고 - 기타 필요한 사항
전담부서	구성	- 기획처
	기능	- 자체평가 자료수집, 검증, 운영, 조정, 관리. 홍보, 결과보고서 작성, 정보공시 등 실무업무

○ 자체평가 조직 구성에 따른 구성원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총장실	총장	박윤희	위원: 5명
	위원	기획처	처장	이인호	
		교학처	처장	이인호	
		사무처	처장	이진행	
		입학홍보처	처장	송대연	
		취창업지원처	처장	오성일	
전담부서	처장	기획처	처장	이인호	실무책임자
	팀원	기획처	계장	황은하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위원장	기획처	처장	이인호	위원: 7명 간사: 1명
	위원	회계세무정보학부	학부장	윤민호	
		경영세무정보학부	학부장	서광채	
		교학처	과장	김은찬	
		사무처	부장	홍영섭	
		입학홍보처	과장	이재현	
		취창업지원처	담당	박석재	
	산학협력단	단장	박준석		
간사	기획처	계장	황은하		

2. 추진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대학 자체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자체평가 모형 선정	- 대학의 특성 확인 - 평가의 목적 규명 - 평가의 유형 선정 - 평가의 범위 선정
자체평가실무위원회 구성	-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및 운영계획 수립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 평가영역, 항목, 내용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유형에 따라 기준설정 - 평가기준 및 내용의 가중치 배점 부여
대학 자체평가 실시	-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및 자료 수집
자체평가위원회	- 대학 자체평가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Ⅲ. 자체평가 평가 항목[지표]

1. 개요

(1) 평가항목 선정과정 및 평가기간

- 2주기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요소(정성 32개(71%), 정량 13개(29%)) 중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선정
- 평가기간 : 2018학년도(2018년 3월 ~ 2019년 2월)를 기준으로 함(2018년도 4월, 10월 대학정보공시)

(2) 평가방법

- 모든 평가는 입증 가능한 자료범위 내에서 정보공시자료,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량평가에 기초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각 지표별 충족여부를 평가함
- 충족여부의 판단은 2주기 기관평가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함
- 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는 해당 기준을 구성하는 세부기준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충족(Y), 미충족(N)으로 평가
- 필수 평가요소 판정 : 지정된 정량적인 요구수준을 달성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충족(Y),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충족(N)으로 평가

(3) 2주기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요소 총괄

- 전문대학 2주기 기관평가인증 기준개선(안) 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지표 측정

기준	세부기준	평가방법	필수여부
1. 대학의 사명과 책무	1.1 대학의 사명 및 발전계획	정성	
	1.2 대학운영	정성	
	1.3 대학의 책무 및 교육성과	정성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의 질 보장	정성	
	2.2 전공 및 교양 교육	정성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3.1 학사관리	정성/정량	재학생충원율★
	3.2 교수학습 지원	정성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정성/정량	
	4.2 현장실습	정성	
	4.3 평생교육	정성	
5. 학생	5.1 학생지원	정성	
	5.2 학생복지	정성	장학금 지급비율★

6. 교직원	6.1 교원	정성/정량	전임교원 확보율★
	6.2 직원	정성	
	6.3 교직원 처우 및 복지	정성	
7. 재정 및 시설	7.1 재정계획 및 운영	정성	
	7.2 재정회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정성/정량	교육비 환원율★
	7.3 교육시설	정성	
7개 기준	18개 세부기준	45개평가요소	

○ 필수 정량평가 충족기준

필수 평가요소명	요구수준	담당부서
재학생 총원	82% 이상	교학처
전임교원의 확보	50% 이상	교학처
교육비 환원	100% 이상	사무처
장학금	10% 이상	교학처

2. 2018년 자체평가 지표 선정 결과

- 2주기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요소 중 정량요소는 모두 13개이며, 이를 2018년 자체평가를 위한 지표로 선정함
- 정량지표 선정(필수지표 포함)

평가요소	정량지표명(필수★표시)	충족요건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 강좌당 학생 수	전공강좌 학생 수 평균 33명 이하 또는 모든 전공교과목 학생 수 40명 이하
2.2.3 실험실습교육 지원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157천원 이상
3.1.1 학생선발	신입생 총원율	91% 이상
3.1.3 수업관리	주당 수업시수	주당 평균시수 12.8 이하
3.1.4 재학생 총원	재학생 총원율★	82% 이상
3.1.5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분포 비율	학교전체 A학점 분포 40% 이하
4.1.3 취업률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취업률	전체 60% 이상
5.1.3 도서관 지원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1.6천원 이상
5.2.1 복지 지원	장학금 지급비율★	10% 이상
6.1.2 전임교원의 확보	전임교원 확보율 ★	50% 이상
6.1.4 연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 이상
7.2.1 교육비의 환원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확보율	100% 이상

IV. 자체평가 결과

1. 총괄

(1) 자체평가 종합 결과(안)

충족	미충족	합계
7	6	13

(2) 평가결과 요약(정량지표 평가 결과, 필수지표 포함)

평가요소	지표명	충족요건	평가결과	충족여부	비고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 강좌당 학생 수	33명 이하	40.78명	N	
2.2.3 실험실습교육 지원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157천원 이상	402,955	Y	
3.1.1 학생선발	신입생 충원율	91% 이상	74.79%	N	
3.1.3 수업관리	주당 수업시수	주당12.8 이하	11.12	Y	
3.1.4 재학생 충원	재학생 충원율★	82% 이상	77.03%	N	
3.1.5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분포 비율	A학점 40% 이하	39.89%	Y	
4.1.3 취업률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취업률	60% 이상	40.6%	N	
5.1.3 도서관 지원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1.6천원 이상	0	N	
5.2.1 복지 지원	장학금 지급비율★	10% 이상	12.034	Y	*1)
6.1.2 전임교원의 확보	전임교원 확보율 ★	50% 이상	78.33%	Y	
6.1.4 연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 이상	0.0426	N	
7.2.1 교육비의 환원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	101%	Y	*2)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확보율	100% 이상	235.9%	Y	

*1)*2) 장학금 지급비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2018학년도 결산서 작성 이전이므로 2017학년도 기준으로 판단함

2. 각 기준별 자체평가 내용

(1) 현장중심 전공교육(정량: 학기별 전공강좌당 학생 수 33명 이하)

- 전공(이론, 실습, 통합)교과만 해당, 교양 제외, 현장실습 제외
- 현장중심 전공교육과 관련하여 전공 강좌당 학생 수 평균 33명 이하를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40.78명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미충족함

학년도/학기	전공교과		
	총 개설 강좌 수(A)	총 수강 학생 수(B)	전공강좌당 학생 수(B/A)
2018/1	128	5,532	43.21
2018/2	171	6,663	38.96
합계	299	12,195	40.78

(2) 실험실습교육 지원(정량,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157,000이상)

-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 실험실습비 / 재학생 수
 - 실험실습비 : 실험실습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 재학생 수 : 전체 재학생으로 정원내와 정원외 모두 포함
- 실험실습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157,000원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 402,955원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충족함

(3) 학생선발(정량, 신입생 충원율 91% 이상)

-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수 / 정원내 모집인원)*100
- (448/599)*100=74.79%
-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201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74.79%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 미충족함

(4) 수업관리(전임교원 주당 평균 수업시수 12.8 이하)

학년도/학기	주당 평균 수업시간		
	전임교원 수(A)	전임교원 총시수(B)	(B/A)
2018/1	47	516	10.97
2018/2	46	519	11.28
합계	93	1,035	11.12

- 수업관리와 관련하여 전임교원 주당 평균 수업시수 12.8시간 이하를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 11.12시간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충족함

(5) 재학생 충원(정량, 재학생 충원율 82% 이상)

-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 / 편제정원)*100

- $(1,436/1,864) \times 100 = 77.03\%$
- 재학생 총원과 관련하여 재학생 총원을 82%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77.03%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미충족함
- (6) 학업 성취도 평가(정량, 성적분포 비율: 학교 전체 A학점 분포 비율이 40% 이하)
 - 2018-1학기: $(8,468/3,378) \times 100 = 39.89\%$
 -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학교 전체 A학점 분포 비율 40% 이하를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 39.89%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충족함
- (7) 취업률(정량,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60% 이상)
 - 졸업생 취업률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60%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40.6%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미충족함
- (8) 도서관 지원(정량,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16,000원 이상)
 -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 / 재학생 수
 - 도서관 지원 체제와 관련하여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16,000원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0원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미충족함
- (9) 복지 지원(정량, 등록금대비 장학금 비율 10% 이상)
 -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10%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2.034%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충족함
 - ※ 장학금 비율은 2018학년도 결산서 작성 전이므로 2017학년도 기준으로 판단함
- (10) 전임교원의 확보(정량,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
 - 전임교원 확보율 = $(\text{전임교원 수} / \text{학생수 대비 교원법정 정원 수}) \times 100$
 - $(47/60) \times 100 = 78.33\%$
 - 교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전임교원확보율 50%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78.33%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충족함
- (11) 연구(정량,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 이상)
 - 전체: 0.0426
 - 교원 연구와 관련하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논문) 0.2건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0.0426건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미충족함
- (12) 교육비의 환원(정량,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
 - 교육비 환원과 관련하여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01%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충족함

※ 교육비 환원율은 2018학년도 결산서 작성 전이므로 2017학년도 기준으로 판단함

(13)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정량, 교사확보율 100% 이상)

○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 교사확보율 100% 이상을 달성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35.9%의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목표를 충족함

V.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1. 활용계획

- 대학홈페이지 공개 및 대학알리미 공시
정보수요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가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홈페이지에 공시함
-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수립
자체평가의 결과분석을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수립에 활용하고, 이에 다른 사업예산과 집행의 균형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활용함
- 대학구성원과의 공유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학구성원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향후 개선방안의 마련에 활용하고 대학발전의 참여 동기를 부여함

2. 향후 개선계획

- 대학 자체평가 항목을 기관평가인증 항목에 맞추어 실시함에 있어 정량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정성지표를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대학 평가관련 지표들을 검토하여 자체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점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다음 자체평가시 지표의 절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표값의 향상정도를 고려 또는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